## 신구조문대비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b>주택공급에 관한 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2023. 7. 31., 일부개정]	<b>주택공급에 관한 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11. 10., 일부개정]
<b>제2조(정의)</b>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